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# [노동]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

황인영 변호사 | 여연심 변호사

#### 1. 주요내용

- 가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10967호, 2012. 7. 26. 시행)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했습니다.
- 나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비율이 장기적으로 인상되도록 하고,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.

- 2. 다운로드 :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전부개정(법률 10967호, 2012. 7. 26. 시행)  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전부개정(대통령령 23987호, 2012. 7. 26. 시행)